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
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
2003년 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교육
사회위원회에 회부된

○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
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

-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·외여비
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前이라도 지방자치법
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·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
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
-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자
함 입니다.

주요내용으로는

-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의 별표 1(국내여비)과 별표 2(국외여비)에
-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國內 및
國外여비지급 기준이 각각 조정된 때에는
- 동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
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
을 新設하는 것입니다.

다음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동 조례는 그 동안 5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,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2000년 5월 4일이며
 - * ① '96. 4, ② '97. 4, ③ '98. 5, ④ 2000. 3, ⑤ 2000. 5
-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(별표 2)은 2002년 1월 4일자로 숙박비가 41,000원에서 46,000원 상향 조정 되었고 동 조례안은 1년을 경과한 후 금년 1월에 개정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.
- 타 시도 교육청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, 인천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울산, 강원은 별표2의 숙박비 금액을 변경 조정 하였으며, 기타 교육청은 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 1, 2에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國內 및 國外 여비지급 기준이 각각 조정된 때에, 동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조정비율에 따른 경비를 각각 지급 할 수 있도록 新設하는 것은
-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이라 생각합니다.
- 그러나 동 조항의 신설로 인해 조례의 개정을 등한시 하므로써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간의 법체계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권이 침해 또는 위축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
- 동 조항의 신설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동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